조정사례 2020 - 1호
(2020.04.21.)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

‘동급의 차량 기준’ 관련 분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SUPERVISORY SERVICE

본 조정사례는 동일 분쟁의 반복접수를 방지하고 일률적인 분쟁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사례의 공유를 통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손해의 분담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사건번호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150호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158호

□ 주요쟁점

○ 고가의 SUV 외제차량의 동급 차량 인정 기준
  – 약관상 「동급차량」의 기준
○ SUV 차량이 여객운수사업법상 차령(車齡) 제한 법규 적용대상인지 여부

□ 주장사항

신청인

1) 「동급의 차량 기준」에 대하여
고배기량 SUV 차량의 대여차량을 '피해차량' 배기량 기준으로 적용하여 동급의 승용차량 대차료 주장
(2019-150호) SUV 벤츠 ML63AMG 6.2 → 승용차 에쿠스 리무진 5.0 요구
(2019-158호) 피해차량 팰리세이드 3.8 → 제네시스 3.8 요구

2) SUV 차량의 차령 제한 법규 적용에 대하여
(2019-15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령 연한 규정은 자동차 대여 사업용 중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SUV 차량은 적용 제외 대상임을 주장

피신청인

1) 「동급의 차량 기준」에 대하여
동급 차량 기준은 '실제 대여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동급 국산 승용차량 대차료 주장(SUV 대차료 동일 그룹 최저요금 적용 주장)

2) SUV 차량의 차령 제한 법규 적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SUV 차량도 차령 연한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피해차량은 운행연한 8년을 초과하여 법규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주장

2 결정 내용 : 신청인 청구 기각

▣ 동급의 차량은 '피해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산차량을 의미
▣ SUV 차량은 차령(車齡) 제한 법규 적용 대상에 해당
▣ SUV · RV 차량 대차료는 동일 규모 그룹 내 차량 중 최저요금 인정

3 결정 이유

□ '동급의 차량 기준'에 대하여

○ 2016.04.01. 개정된 약관에 따라 실제 대여한 대차비용(외제 승용차량)이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차량 대차료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 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차량 통상요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실제 대차료가 동급 국산차량 통상요금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대여차량의 대차료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급의 차량은 피해차량 배기량 기준' 의미

□ 차령법규 제한에 대하여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동차 분류에 의하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법하게 제작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5인승 SUV 차량 역시 차령 제한 법규 적용 대상

○ SUV · RV 차량은 차량 구조, 승차 인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동일 규모 그룹 내 차량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붙임 1. 관련 규정

□ 여객운수사업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조(자동차의 종류)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 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2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이 운행연한(이하 "차량")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2(*)와 같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 · 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9년
		일반택시(경형 · 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전기자동차)	6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경형 · 소형 · 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붙임 2.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2019-150, 158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조 서

1. 번호 및 사건명 : 제6-15호(분쟁 2019-150) 대물손해배상분쟁

2. 분쟁 당사자

ㅇ 신 청 인 : 차OO(OO렌터카)

ㅇ 피신청인 : 전국OO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공제조합이사장)

3.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가. 사실관계

ㅇ 피신청인은 (유)OOOO와의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계약자동차 : 경기OOOOOO호, 공제기간 : 2018.OO.OO.~2019.OO.OO.)을 체결한 사실.

ㅇ 2019.06.22. 15:00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요금소 부근에서 피신청인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 중 4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신청인차량 측면을 접촉한 사고.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은

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1항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

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2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중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본 건의 피해차량인 SUV 차량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3.대차료 항목 나. 인정기준액을 보면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1) "동급" 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
(*2) "통상의 요금" 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3) "규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고의 피해차량은 벤츠 ML63AMG (6,209CC) SUV 차량으로서 약관상 "동급" 의 의미에 비추어 5,000cc의 국산차량의 대차료 한도 기준이 인정(에쿠스 5.0 리무진) 되어야 함에 따라 4,032,000원 (480,000원×12일×70%-통상의 요금 할인)의 대차료를 주장.

2)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은 피해차량이 SUV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행연한에 관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SUV 차량이라 하여 관련 법 규정이 당연히 배제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을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사실,

나) 가사 SUV 차량이 운행연한 초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 SU

V·RV·승합차량의 대차료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SUV · RV · 승합차의 경우 차량 구조, 승차인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기준 그룹 내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SUV·RV·승합차를 선택하여 렌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2000cc 이상의 대형 RV·SUV 차량 적용이 가능한 본 사건의 경우 대형 그룹(C) 내에 있는 차종 중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인 올뉴산타페 2.2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196,000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4. 조정결정 사항

가. 의결사항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 유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대차료에 대한 분쟁으로, 2019년 제6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각 분쟁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자동차 분류에 의하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1호는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에서 SUV차량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피해차량인 '벤츠 ML63AMG'는 승차정원 5인, 배기량이 6,209cc인 '대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2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② 본 건 피해차량은 운행연한 8년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항목 나. 인정기준 중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승용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SUV · RV 차량은 차량구조, 승차인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동일 규모 그룹 내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SUV 대형 C그룹 올뉴산타페 요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의결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19년 11월 29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조 서

1. 번호 및 사건명 : 제6-18호(분쟁 2019-158) 대물손해배상분쟁

2. 분쟁 당사자

ㅇ 신 청 인 : 김OO(OOOO렌터카)

ㅇ 피신청인 : 전국OO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공제조합이사장)

3.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가. 사실관계

ㅇ 피신청인은 조합원 ㈜OO과의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차량번호 : 경기OOOOOO호, 공제기간 : 2019.OO.OO~2020.OO.OO.)을 체결한 사실.

ㅇ 2019.06.12. 10:55분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 후 대여요금을 청구한 사고.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은

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3.대차료 항목 나. 인정기준액을 보면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u>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으로 규정하고 있고</u>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고의 피해차량은 3,800cc 팰리세이드 RV차량으로서 약관상 "동급"의 의미에 비추어 3,800cc의 국산차량의 대차료 한도 기준이 인정(제네시스 3,800cc 되어야 하는 사실(피해차량 배기량 기준 주장),

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롯데렌터카 기준 팰리세이드 대차료(7일 이상 239,000원)는 실제 제네시스 3.8 기준(358,000)에 훨씬 못미치는데 그 이유는 팰리세이드는 모델별로 배기량이 다양(2.2디젤~3.8가솔린)함에도 이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대차료 인정기준의 원칙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의 배기량 국산차량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인 358,000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대차비용 전액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대여차량 벤츠 220D의 대차료(400,000원)가 이를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차료 4,009,600원 [358,000원×16일×70%(대법원 기준 통상의 요금 - 대형3사 기준 30% 할인)]전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2) 피신청인은

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35(2019.05.17.) 조정안에 따르면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된 대차료 상당액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차료 지급기준은 대여차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대여차량인 벤츠 220D에 해당하는 중형 승용 최저가는 95,200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나) 예비적으로 피신청인이 첨부한 **금융감독원 SUV·RV·승합차량의 대차료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SUV · RV · 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량 구조, 승차인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기준 그룹 내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SUV·RV·승합차를 선택하여 렌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2000cc 이상의 대형 RV·SUV차량 적용이 가능한 본 사건의 경우 대형 그룹(C) 내에 있는 차종 중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인 산타페 2.2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196,000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4. 조정결정 사항

가. 의결사항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 유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대차료에 대한 분쟁으로, 2019년 제6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각 분쟁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① 법령해석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문언 해석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법률 문언에 의해서도 그 의미가 명확히 해석되기 어려운 경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해석함이 상당한 점,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여 대차료 지급기준을 '동종'의 렌트차량에서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등으로 변경한 당해 자동차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2016. 4. 1.부터 시행하였으며 관련 보도자료 등에서 '피해차량과 동급의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렌트차량 제공방식 개선'의 제목으로 동급 차량의 판단기준은

'피해차량'인 점을 명확히 한 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항목 나. 인정기준 중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승용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급차량' 제공을 명시한 조항과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는 바, 원칙조항과 단서조항의 판단기준을 '피해차량'으로 일치시켜 해석하는 것이 조항 간 정합성이나 약관 전체의 조화를 고려할 때에도 합리적인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대차료 지급기준의 '동급차량'은 피해차량 기준의 동급차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대다수의 대차료 분쟁사례는 본 건처럼 실제 대차비용(외제차량)이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차량 대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이고 이 때, 기준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차량 통상요금 한도로 인정하되 이와 반대로 실제 대차료가 동급 국산차량 통상요금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대여차량의 대차료를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246902,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35)하는 것을 원칙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SUV · RV 차량은 차량구조, 승차인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동일 규모 그룹내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건의 적용대차료는 SUV 대형 C그룹 올뉴산타페 요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의결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2019년 11월 29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